

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	<b>보 도 자 료</b>			 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배포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기업회계팀장 김 선 문 (02-2100-2690)	<b>담 당 자</b>	허남혁 주무관 (02-2100-2695)	
	금감원 회계조사국장 홍 순 간 (02-3145-7290)		김세동 팀장 (02-3145-7320)	
			이현영 팀장 (02-3145-7308)	

## 제 목 :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11일 제5차 회의에서,
-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(주)에스에프씨 등 2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, 대표이사 해임권고, 감사인지정,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,
  -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 하였습니다.

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<b>금융위원회 대 변 인</b> prfsc@korea.kr		
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

(붙임)

**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**

(제5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0.3.11. 의결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에스에프씨</p> <p>결산기 : 2016.12.31. 2017.03.31. 2017.06.30. 2017.09.30. 2017.12.31. 2018.03.31. 2018.06.30. 2018.09.30.</p> <p>코스닥시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</p>	<p><b>【회사】</b></p> <p>① 선급금 허위계상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(’17년1분기 2,200백만원, ’17년반기 3,740백만원, ’17년3분기 3,990백만원, ’17년기말~’18년3분기 3,190백만원)</p> <p>- 前대표이사가 증빙없이 인출한 자금을 선급금으로 허위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에도 미기재함</p> <p>②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 관련 예금 등 담보제공사실 주식 미기재 (’17년반기~’17년3분기 14,880백만원, ’17년기말 7,357백만원)</p> <p>-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저축 은행에 회사보유 예금, 자기주식, 부동산 우선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주식에 미기재함</p> <p>③ 유상증자 자금 사용제한 주식 미기재 (’17년3분기 10,000백만원)</p> <p>- 유상증자 대금 157억원 중 100억원에 대해 타법인 주식 취득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인출이 제한된 사실을 주식에 미기재함</p> <p>④ 000 주식 및 전환사채 인수시 체결한 약정 등 주식 미기재 (’17년기말 2,818백만원, ’18년1분기 15,090백만원, ’18년반기 11,516백만원, ’18년3분기 5,000백만원)</p> <p>- 000 주식 인수시 000의 경영성과에 따라 0000000 등으로부터 회사의 주식을 무상 양도 받을 수 있는 조건부 대가 약정을 체결 하였음에도 주식에 미기재함</p> <p>- 000 발행 전환사채를 0000000로부터 인수 하면서 ①0000000 주식 100,000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 ②회사가 담보로 제공받은 동 주식이 조건부로 회사에 귀속되도록 약정한 사실을 주식에 미기재함</p> <p>⑤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주식 미기재 (’16년기말 9,567백만원, ’17년1분기 12,089백만원, ’17년반기 14,141백만원, ’17년3분기 11,838백만원, ’17년기말 10,538백만원)</p> <p>- 특수관계자인 0000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내역을 주식에 미기재함</p>	<p><b>회 사 :</b></p> <p>- 과징금 355.1백만원</p> <p>- 감사인지정 2년</p> <p>- 검찰고발(회사, 前대표이사)</p> <p>- 대표이사 해임권고</p> <p>※ 감사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 임원이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같음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(주)에스에프씨	<p><b>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</b></p> <p>① 특수관계자 거래 감사절차 소홀('17년 : 3,190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에 前대표 이사가 증빙없이 인출한 자금(39.9억원)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차감 후 순액(8억원)으로 기재함으로써 마치 대부분의 금액이 회수된 것처럼 공시하거나 일부 금액의 공시를 누락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</p> <p>②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관련 예금 등 담보제공내역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'17년 : 7,357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자기주식과 예금을 재무제표 주식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</p> <p>금융기관 조회서 내용이 재무제표 주식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금융기관 조회서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</p> <p>③ 000 주식 인수시 체결한 약정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('17년 : 2,818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회사가 000 주식을 인수하면서 체결한 조건부대가와 관련한 약정등에 대해 재무제표 주식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</p> <p>④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('16년 : 9,567백만원, '17년 : 10,538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0000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재무제표 주식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재무제표 주식이 적절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</p>	<p><b>이촌회계법인 :</b></p> <p>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%</p> <p>- (주)에스에프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</p> <p><b>공인회계사 1인 :</b></p> <p>- (주)에스에프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</p> <p>-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</p> <p>- 직무연수 4시간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</p> <p>결산기 : 2018.12.31.</p> <p>코스닥시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복합운송용 타이어 유통</p>	<p><b>【회사】</b></p> <p>① 특수관계자거래 주식 미기재 (’18년 1분기 6,000백만원, 2분기 5,450백만원, 3분기 5,450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’18.2.12.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〇〇〇의 증자자금 60억원을 회사의 자회사를 통하여 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’18년 연결재무제표 주식 특수관계자 거래에 미기재함</p> <p>② 영업이익 과대 계상 (’18년 2,334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’18년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회사의 비용을 자회사에 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함</p>	<p><b>회 사 :</b></p> <p>- 과징금</p> <p>※ 회사의 과징금 부과액은 「자본시장법」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담당임원 해임권고</p> <p>- 검찰고발(회사, 前대표이사 등 3명)</p> <p>- 시정요구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)